

기 관 명

우

주 소

/전화()○○○○

/전송()○○○○

○○과

과장 ○○○

/서기관, 사무관 또는 주사 ○○○

/담당 ○○○

문서번호

시 행 일

수 신

발 신

직인

제 목 소득세·법인세 원천징수 신고·결정·경정 내용 통보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제3호·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·제4호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신고·결정·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
니다.

연번	원천징수의무자			⑦ 신고등 구분	⑧ 귀속 연월	⑨ 지급 연월	⑩ 납부일	⑪ 세무서 (담당자)	⑫ 구분	⑬ 소득의 종류	⑭ 신고· 결정· 경정일	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					지방소득세 세액		환급 신고계좌								
	①법인명 (상호)	③사업자 등록번호	⑤사업장 소재지									⑮소득지급		⑯ 원천징수 세액	⑰당월조정 환급세액 (농특세 제외)	세액		⑳과세표준 (㉔=⑮)	㉕ 산출 세액	㉖ 은행 코드	㉗ 계좌 번호						
	②대표자	④법인(주민) 등록번호	⑥연락처									인원	총지급액			⑱ 본세	㉙ 가산세										
총계								()	당초																		
									수정																		
소계		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
									수정																		
1		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
									수정																		
2		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
									수정																		
⋮		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
									수정																		
소계		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
									수정																		
1									()	당초															、		
										수정																	

작성방법

□ 원천징수의무자란

- ① 법인명(상호): 법인은 법인명, 사업자는 상호명을 기재합니다.(개인은 빈칸)
- ② 대표자(성명): 개인은 성명, 사업자 및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.
- ③ 사업자등록번호: 사업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④ 법인(주민)등록번호: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,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 사업장소재지: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,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, 본점을 기재합니다. 다만,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 소재지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⑥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
□ ⑦ 신고 등 구분: 신고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, 결정,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 또한, 신고 중 매월분 신고서는 "매월", 반기별 신고서는 "반기", 수정신고서는 "수정",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"소득처분"으로 표시(지점법인·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)하며,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"매월" 및 "연말"을 동시에 기재합니다.

□ ⑧ 귀속연월: 소득발생 연월[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개시월(예 : 상반기는 ××년 1월)을 말합니다]을 기재합니다.

□ ⑨ 지급연월은 지급한 월(또는 지급시기 의제월)[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(예: 상반기는 ××년 6월)을 말합니다]을 기재합니다.

□ ⑩ 납부일: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을 기재합니다.

□ ⑪ 세무서, 담당자: 해당기관의 코드 및 업무 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
□ 원천징수명세 및 결정내역

- ⑫ 구분: "당초"는 "수정"으로 통보되는 자료의 직전 자료를 기재하며, "수정"은 결정, 수시부와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.
- ⑬ 소득의 종류: 개인은 근로소득, 퇴직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연금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저축해지 추정세액 등, 비거주자 양도소득으로 적고, 법인은 내·외국법인 원천으로 적으며, 수정신고(세액) 사항은 수정신고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⑭ 신고·결정·경정일: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·결정·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.
- ⑮ 소득지급(인원, 총지급액), ⑯ 원천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.
-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: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- ⑱ 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·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.
- ⑲ 가산세: 납부지연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
□ 지방소득세 세액란

- ㉑ 산출세액: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.

□ 환급금 신고계좌란

- ㉒ 은행코드: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.
- ㉓ 계좌번호: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